

200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(안)

의안 번호	9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05. 7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3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, 동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□ 2003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세입결산액 (정수결정액) (B)	B/A (%)	세출결산액 (지출액) (C)	C/A (%)	잉여금 (D)	D/A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8,372,811	7,849,743	93.75	6,346,598	75.80	3,113,271	37.18

가. 세입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징수결정액 (B)	B/A (%)	수납액 (C)	C/A (%)	미수납액 (D)	D/A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8,372,811	7,849,743	93.75	7,814,517	93.33	35,226	0.42

나.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예산현액 (B)	지출액 (C)	C/B (%)	이월액 (D)	D/B (%)	불용액 (E)	E/B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8,372,811	9,441,631	6,346,598	67.22	2,832,113	30.00	262,920	2.78

다. 잉여금 처리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 회계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조금 집행잔액	순세계잉여금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3,113,271	64,000	21,000	2,747,112	-	281,159

□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관계법령 발췌서 붙임”

-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
-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
-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

나. 기타사항

- 2003회계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보고서 붙임
- 2003회계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붙임

관 계 법 령 발 취 서

지 방 자 치 법

第125條(決算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出納閉鎖후 80日이내에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査委員의 決算意見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지 방 공 기 업 법

第35條(決算) ①管理者는 每 事業年度末日 現在로서 모든 帳簿를 마감하여 決算을 하여야 한다.

②管理者는 每 事業年度 終了후 2월 이내에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決算을 作成하고 이를 당해年度の 事業報告書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와 함께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 및 事業報告書와 기타 書類에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報告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령

제36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대차대조표
2. 손익계산서
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4.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
5.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
6. 결산부속명세서